

「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2년 11월 18일

나. 제출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1월 28일

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사회복지국장 박 경 하

나. 제안이유

- 보건복지부의 화장지원금 도입 권고(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-1307호, 2022.3.23.)와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「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화장지원금 조항을 신설하여 관내 화장시설을 불가피하게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관외 요금으로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여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화장지원금 지급 조항 신설(안 제10조의2, 별지 제1호~제3호서식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조례안은

- 보건복지부의 화장지원금 도입 권고와 상위법의 지자체 의무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3월, 특정 지역으로 화장수요가 집중되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외 화장지원금 도입을 권고함.
- 상위법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“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”라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권고 역시 같은 취지이므로, 관내 화장장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향후 집행부에서는 관외 화장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공정한 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